

창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43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437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3295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상대학교병원

변론 종결 2020. 5. 14

판결선 고 2020. 6. 11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32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경 목재 절단 작업 과정에서 목과 허리 부위를 다친 후 같은 부위 에 디스크 증세가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8. 10. 1. 피고 병원 척추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위 증세로 상담받은 후 MRI 촬영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오전 09:27경부터 목과 허리 부위에 대하여 MRI 촬영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나. 피고 병원은 MRI 촬영의 결과를 영상정보시스템(PACS)에 저장하였는데, 위 시스템에는 이 사건 검사에 따른 원고의 경추(O spine), 요추(L-spine), 흉추(T-spine) 각 시상면과 요추 축상면 촬영 사진 총 18장과 원고의 이름(B), 진료번호(C), 영상촬영일자 및 시간(2018. 10. 19. 오전 9:27:54)이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호증(가시번호가 있는 것은 가시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호증, 제1 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19. 디스크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목과 허리 부분에 관한 MRI 촬영을 받았다.

원고는 위 증세가 발생한 이래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는데,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타 병원에서 촬영할 때보다 짧았으므로 피고 병원이 MRI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 병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 병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와 검사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포함한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10. 19. 피고 병원에서 경추,요추, 흉추 시상면과 요추 측상면에 관한 MRI 촬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영상의 촬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줄어들거나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등 검사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타 병원과 검사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MRI 촬영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판사 강희구판사 양철순